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한국언론진흥재단 -

2018.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범위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요 현황	2
1. 조직 및 인원	2
2. 예산 현황	3
3. 주요 업무	3
III .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4
1. 총 평	4
2.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8
3.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① 미디어교육포털 시스템구축사업 추진 부적정(문책·주의)	9
② 신문공동배달센터 임차보증금·대여금 회수금 처리 부적정(시정·주의) ..	17
③ 「정관」 등 규정 운영 부적정(시정·통보)	21
④ 의원면직 처리 업무 불철저(주의)	31
⑤ 긴급입찰공고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불철저(주의)	34
⑥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및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46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등(주의·통보)	52
⑧ 소프트웨어 관리업무 소홀(주의)	59
⑨ 해외연수·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사업 추진 부적정(주의·통보) ..	64
⑩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대보증인 제도 불합리(권고)	73
⑪ 업무추진비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통보)	76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의 목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관운영, 언론산업 진흥사업 관련 예산집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는데 두었다.

2. 감사범위

이번 감사는 2015년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사업과 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조직·인력 관리 실태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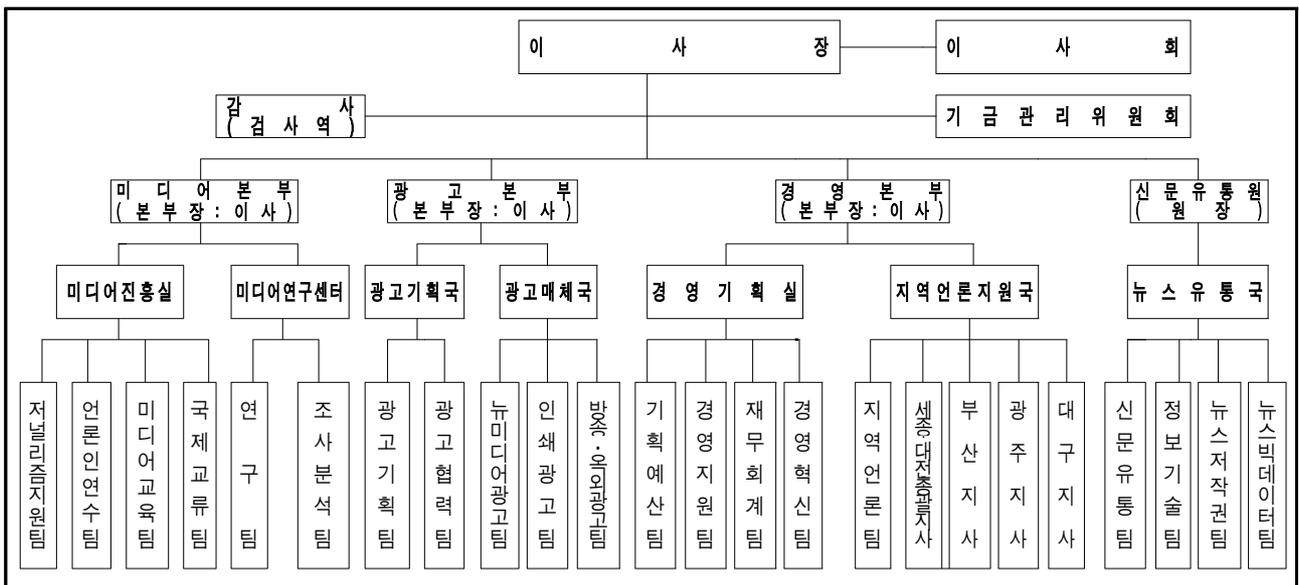
감사기간은 2018. 2. 1.부터 2. 21.까지 13일 간 실지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인원은 감사담당관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부 전산사무관의 지원을 받았다.

II.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원

2010년 2월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이 통합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언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조사·연구·교육 지원, 신문의 발행·유통 등 발전 사업, 한국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지원, 언론인 복지증진사업, 정부광고·법원공고를 대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동 재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조직은 2실 4국 1센터 20팀 4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12월 기준 정원 167명 중 현원 166명이 근무하고 있다.



구분	임원			일반직						연구직	임피제 별도장원	총계
	이사장	이사	유통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정원	1	3	1	5	15	32	40	60	152	5	5	167
현원	1	3	1	5	15	32	40	59	151	5	5	166

2. 예산 현황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회계는 언론진흥기금회계, 법인회계(일반회계, 언론인금고회계, 유통원 회계), 국고회계로 구분되며, 2017년 지출 규모는 약 1,245억 원이다. 또한 수탁관리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017년 지출규모는 약 101억 원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약 21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입·지출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I. 언론진흥기금회계		I. 언론진흥기금회계	
계	35,736	계	35,736
□ 정부내부수입(국고)	-	□ 신문발전지원사업	22,862
□ 자체수입	20,797	○ 뉴스미디어진흥	10,486
○ 이자수입 등	2,231	○ 뉴스유통구조개선	4,172
○ 기타경상이전수입(법인출연금)	15,000	○ 언론공익사업	8,204
○ 용자원금회수	3,566	□ 기금관리비	333
□ 여유자금회수	14,939	□ 여유자금운용	12,541
II. 법인회계		II. 법인회계	
계	88,654	계	88,654
□ 일반회계	59,447	□ 일반회계	59,447
○ 광고대행수수료	43,780	○ 일반관리비(인건비, 경비)	17,193
○ 뉴스저작권위탁수수료	1,112	○ 언론진흥사업비	6,634
○ 프레스센터운영수입	3,453	○ 광고서비스사업비	8,243
○ 협업사업수입	516	○ 프레스센터운영	3,970
○ 영업외수입	676	○ 경영선진화사업비	927
○ 전기이월액	9,900	○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15,000
□ 언론인금고회계	28,707	○ 예비비	1,769
○ 언론인금고사업수입	1,003	○ 고정자산 및 법인세 등	5,306
○ 언론인금고용자원금회수	15,600	○ 차기이월액	405
○ 전기이월금	12,104	□ 언론인금고회계	28,707
□ 유통원회계	500	□ 유통원회계	500
○ 유통원보증금수입	500	III. 국고회계	
III. 국고회계		계	170
계	170	□ 미디어시장 조사 사업비	170
□ 국고보조금	170	○ 여론집중도 조사	170
○ 여론집중도 조사	170	총 계	
총 계		총 계	124,560
총 계	124,560	총 계	124,560

3. 주요 업무

- 언론산업 진흥 지원 및 조사·연구·교육 지원, 언론인 복지증진 지원
- 신문의 발행·유통 등 발전 지원, 정부광고·법원공고 대행
- 한국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지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집행·관리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1. 총 평

감사결과 미디어교육포털 시스템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등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명, 천 원)

구분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권고	통보		수사 요청	현지 조치
						일반	인사(인원)		
건수	11	1 (2명)	행정상 시정 1 재정상 시정 1 (41,168 환수)	6	1	1	-	-	-

이번 감사결과 확인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위법·부당한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역업체 선정,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처리 등의 실태를 보면 ▲ 미디어교육포털 시스템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착수계 승인 절차 누락, 수행업체의 인력 투입 여부 미확인 등 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용역 결과물이 계약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검수 처리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수행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았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40일 전, 긴급입찰의 경우는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계약 34건(추정가격 2.1억원 이상) 중 긴급입찰 사유가 없음에도 15건을 긴급입찰, 긴급입찰인 경우에도 7개 사업은 최소 공고일수인 10일을 미 준수, 긴급입찰 사유가 없음에도 긴급입찰 공고한 11건은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등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은 불용해야 함에도, 낙찰차액을 동일 사업에 재 집행하고 있으며, 그 낙찰차액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수의계약 하라고 의결하자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수의계약 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또한 ▲ 언론재단은 입찰·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한 ‘입찰·계약 업무 개선 방안(2015.12월)’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조달청에 일임해야 함에도 정보화사업 12건의 기술평가를 자체 진행하였고, 제안서 평가위원 POOL이 있으나 그 인원수가 적어 평가위원이 중복 선정되고, 평가위원 선정 기준, 방법, 보안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지 않아 정보화사업의 기획·조정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 신문공동배달센터 통폐합 및 폐쇄조치로 인한 보조금 회수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1개소 임차보증금 공매 배당금 12,046천 원과 대여금을 분할 상환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139개소에 부과한 지체상금 29,122천 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주거래 여행사로 선정된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하겠다는 수탁업체 선정계획과 달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총 50개 사업 중 36%인 18개 사업에 대해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업체 선정계획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지출증빙자료를 미확인하는 등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언론재단은 매년 ‘법인회계’에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면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을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편성하지 않는 등 준정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둘째, 조직, 인사 및 재물관리 실태를 보면 ▲ 언론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국가계약법 및 정부 각종 지침에 맞게 자체 내규를 운영해야 함에도 유급 휴가 범위, 국외여비 지급 기준, 국내 이전비·가족여비 지급 기준, 법인카드 사용 지침 등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단체협약 결과(예산소요 추계 포함)’는 이사회에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언론재단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포함하지 않는 등 각종 규정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 ▲ 또한 비위에 대해 내사 중일 때 그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한 경우 의원면직 처리가 제한됨에도 성희롱 비위 직원의 징계양정이 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하였으며,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시 연대보증제도는 맞보증 및 직원 1명이 2~4명 직원에게 연대 보증을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연대보증제도 대신 보증보험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지도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일부를 등재하지 않는 등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언론재단은 법인회계의 비목별 편성 등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고기간 준수, 수의계약 요건 준수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화 용역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희롱 비위자에 대한 징계 업무, 의원면직 처리 제한 업무 등을 철저히 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엄단 및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단위 : 명, 천원)

일련 번호	관계기관	처분요구 종 류	제 목	인원 (금액)	비 고
1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책·주의	미디어교육포털 시스템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2	
2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정·주의	신문공동배달센터 임차보증금·대여금 회수금 처리 부적정	(41,168)	
3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정·통보	「정관」 등 규정 운영 부적정		
4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의	의원면직 처리업무 불철저		
4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의	긴급입찰공고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불철저		
6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의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사용 및 수의 계약 부적정		
7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의·통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등		
8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의	소프트웨어 관리업무 소홀		
9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의·통보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 사업 추진 부적정		
10	한국언론진흥재단	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대보증인 제도 불합리		
11	한국언론진흥재단	통보	업무추진비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합 계		11건		2 (41,168)	

3.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문화체육관광부

문책·주의요구

제 목 미디어교육포털 시스템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실 국 미디어정책국

관 계 기 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 용

1. 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 한다.)은 [표 1]과 같이 기 운영 중인 미디어교육 포털 사이트의 관리 기능 개선을 위해 2015년에는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교육 포털사이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운영, 통계 기능 개선을 위해 “미디어교육 포털 유지보수 용역”, “미디어교육 포털 운영 용역”, “미디어교육 포털 통계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사업추진 현황

(단위: 원)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액	계약업체
2015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5. 7. 29. ~ 12. 21.	96,500,000	▽▽▽▽▽▽▽▽▽▽
2016	미디어교육 포털사이트 고도화	2016. 9. 29. ~ 12. 19.	71,830,000	△△△△
2017	미디어교육 포털 유지보수 용역	2017. 4. 24. ~ 12. 15.	20,200,000	△△△△
	미디어교육 포털 운영 용역	2017. 4. 24. ~ 12. 15.	21,400,000	△△△△
	미디어교육 포털 통계 기능 개선	2017. 11. 1. ~ 12. 15.	9,900,000	△△△△
계			219,830,000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감사결과 언론재단은 2015년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착수계를 제출받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수행업체의 인력투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업이 계약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검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6년 “미디어교육포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오류들에 대해 2015년 수행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고,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2016년 수행업체의 보고대로 승인 절차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2017년 언론재단은 2016년 “미디어교육포털 고도화” 사업의 과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해결하려면 전년도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전년도 사업 수행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미디어교육 포털 유지보수 용역” 사업과 “미디어교육 포털 위탁운영 용역” 사업을 분할하여 전년도 사업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언론재단은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계약, 용역관리 및 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5년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감독 및 검수업무 부적정

미디어교육팀 A과 B는 2015. 7. 6.부터 2015년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감독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A의 경우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약서에 포함¹⁾되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2조²⁾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³⁾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약서에 포함되는 제안 요청서 “나. 특수계약조건”에는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사업담당자 A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주)▽▽▽▽▽▽▽▽▽▽가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고, 업체의 인력투입계획과 현황을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 기간 확인한 결과 (주)▽▽▽▽▽▽▽▽▽▽는 중급기술자 1명을 계약일 (2015. 7. 29.)보다 3개월 이상 늦게 채용(2015. 11. 9.)하는 등 제안서와 다르게 인력을 운영하였음에도 당시 사업 담당자인 A은 용역 완수 때까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수행업체가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는지, 계약대로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였는지 여부 등 인력 투입에 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 1) 계약서의 특기사항에 따르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제반서류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음.
 -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A은 2015. 12. 16. (주)▽▽▽▽▽▽▽▽▽▽가 용역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자 2015. 12. 28. 검사한 후 잔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는 계약서와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함과 아울러 시정조치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A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검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A은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대로 과업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주)▽▽▽▽▽▽▽▽▽▽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와 실제 개발된 페이지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구현 위주로만 결과물을 확인한 후 검사를 완료하였다.⁴⁾

이에 따라 미디어교육팀⁵⁾은 2016년 “미디어교육포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사업 완성도가 미흡하여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판단⁶⁾했음에도 당시 결과물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B의 경우

위 과정에서 2015. 7. 6. ~ 2016. 6. 30. 기간 중 미디어교육팀 업무를 총괄한 B는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 A과 B의 행위는 언론재단 「취업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4) A와 B는 문답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였고, 2016년 사업추진 과정 중에 발견된 문제점들은 2015년 용역 수행업체의 잘못과 사업관리의 미흡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5) 2016년 사업은 B와 A의 후임자인 C(2016. 7. 1.~현재)과 D(2016. 7. 1.~2017. 10. 11.)가 수행

6) D는 A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2016년 고도화 사업 중에 발견되었고, 2016년 사업은 2015년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 사업 결과물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발견된 것으로 생각했으나, 하자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업체들간 주장이 달랐고 하자보수 사항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웠으며, 오류를 빨리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업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답변.

「인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한다.

3. 2016년, 2017년 미디어교육포털사업 추진 부적정

언론재단은 2015. 2월 ‘자유학기제 시행과 재단 미디어교육 수요증가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필요’ 등의 이유로 기존에 운영하던 미디어교육 포털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언론재단은 시스템 구축 예산(1억 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으로 계획하였고, 2015년에는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1차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6년에는 “미디어교육 포털 고도화” 사업으로 추가 기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6년 “미디어교육포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6년 수행업체인 (주)△△△△로부터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는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는 보고를 받고, 계약한 사업내용 중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과업을 현 사이트의 문제점 보완과 오류 수정과업으로 대체⁷⁾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약서에 포함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르면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업체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당시 사업담당자 D는 업체가 변경하겠다고 보고한 과업들이 당초 계약한 과업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정식 문서를 제출받아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업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7) 2016년 “미디어교육포털 고도화” 사업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통계정보 오류 발생”, “설계상 오류로 인하여 사용자 데이터 수급에 오류 존재”, “단순 텍스트 나열로 연속성, 추세 등에 대한 인지 어려움” 등 기존 구축된 관리자사이트에 오류가 많아 계약한 업무 중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기존 사이트 오류 수정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음.

한편 언론재단은 2017년에 “미디어교육 포털 유지보수 용역”, “미디어교육 포털 운영 용역”, “미디어교육 포털 통계 기능 개선”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 “미디어교육포털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주)△△△△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2017년 ‘미디어교육 포털’ 관련 사업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미디어교육 포털 유지보수 용역	2017. 4. 24. ~ 12. 15.	○미디어교육 포털 사이트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보완 ○시스템 구축 이후 발생하는 업무처리 절차 변경 등을 고려한 기능 안정화 ○포털 이용 고객과 관리자가 시스템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 및 기능 보완
미디어교육 포털 운영 용역	2017. 4. 24. ~ 12. 15.	○프로그램 이상 유무 모니터링 및 테스트 ○프로그램 오류 및 결함 예방 ○웹 접근성 수정·보완 및 SSL 인증 업데이트 등 보안 관리 ○주요 통계 데이터 추출 및 관리 ○팝업 등 각종 게시물 관리
미디어교육 포털 통계 기능 개선	2017. 11. 1. ~ 12. 15.	○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집계 및 축적기능 추가 등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중 “미디어교육 포털 유지보수 용역”과 “미디어교육 포털 운영 용역”은 통합하여 발주해야 했으나,⁸⁾ 언론재단은 2016년 실시한 “미디어교육포털 고도화” 사업 내역 중 개발하지 못한 기능들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2016년에 “미디어교육포털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고 판단하여,⁹⁾ 위 사업들을 분할하여 각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위 과정에서 2016. 7. 1. ~ 현재(2018. 3. 21.)까지 미디어교육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C은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8) “미디어교육 포털 유지보수 용역”과 “미디어교육 포털 운영 용역”은 계약기간이 2016. 4. 24. ~ 12. 15.으로 동일하고, 두 사업 모두 (주)△△△△가 수행한 점을 볼 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정하지 않고, 당시 사업담당자인 D도 두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9) 2017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미디어교육팀은 2016년 사업을 통해 계획했던 통계관리, 강사배정을 편하게 하는 기능 등이 과업이 변경됨에 따라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고도화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2016년 고도화사업을 추진했는데 또다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내부의견이 있자, “미디어교육 포털 유지보수 용역”, “미디어교육 포털 운영 용역”, “미디어교육 포털 통계 기능 개선” 등 3건의 사업에 2016년 사업의 오류를 수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추진. 사업담당자 D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6년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가 2017년에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2015년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감독 및 검수업무 부적정’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하면서도, 계약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고, 인력 투입 확인,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 확인 등 사업관리와 검수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② ‘2016년, 2017년 미디어교육포털사업 추진 부적정’ 관련

언론재단은 정상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절차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였고, 향후에는 걱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① 2015년 미디어교육포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B와 A을 언론재단 「인사규정」 제43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문책)

② 2016년 미디어교육포털 고도화 사업 추진 시 과업변경 승인 절차 미준수 등 용역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개인주의)

③ 그리고 향후 용역사업 수행 시 업체의 투입인력 임의 변경 여부 확인, 과업변경 승인 절차 준수, 계약서 및 관계서류에 따른 사업 이행 확인 등 용역감독 업무와 검수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분할 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시정·주의요구

제 목	신문공동배달센터 임차보증금·대여금(지체상금) 회수금 처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미디어정책국
관 계 기 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 한다)은 신문공동배달센터(경기도 부천시) 임차보증금(50백만 원) 채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임차건물(○○○ 소유)¹⁾이 경매(2009. 5. 4.)되어 3,513,829원을 배당받아 국고에 반납(2015. 4. 3.)하였으나, 미회수 임차보증금(46,486,171원)을 결손처리²⁾ 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한 ●●●(○○○의 부인) 명의의 오피스텔이 2011. 5. 27. 경매되어 언론재단은 공매배당금 12,046,013원을 추가로 배분받아 보관하고 있다.

또한 언론재단은 「공동배달센터 운영 규정」 제9조 제2항3), 제4항4) 및 「공동배달센터 자산관리 지침」 제12조⁵⁾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환기한

-
- 1) 임차부동산 시세평가액이 120백만 원이며 선순위는 71.5백만 원이었기에 선순위 근저당을 30백만 원 이하로 감액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대출을 갚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감액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음.
 - 2) 채무자 ○○○에게 청구했으나 파산 상태나 다름없고 추가로 확보한 ○○○의 처 소유 오피스텔 또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회수가 불가하다고 자체 판단함.
 - 3) 공배센터 장은 재단이 대여금을 지원한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마다 균등 분할하여 대여금 상환을 해야 한다.
 - 4) 대여금을 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상당기간 연체하는 경우 재단은 대여금 전액 또는 잔액을 즉시 상환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공배센터장이 요구한 상환기일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5)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상환하되 분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대여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할상환. 분할상환은 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며, 사전에 대여금 상환안내 공문발송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내 반납하지 않은 공동배달센터(139개소) 대여금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연체이자 8% 부과)⁶⁾하여 29,122,641원⁷⁾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교부결정이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05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⁸⁾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 목적인 (구)신문유통원 지원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배달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한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 등은 회수가 전제되는 국고보조금이므로 언론재단은 공동배달센터의 통폐합 및 폐쇄 등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보조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한편 언론재단은 (구)신문유통원(2010. 2. 1.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⁹⁾ 당시 신문공동배달센터(이하 ‘공배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지원된 국고보조금 중 공배센터의 통폐합 또는 폐쇄조치 등으로 인하여 회수된 임차보증금과 장기대여

6) 신문유통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3조(지연배당금) 분할상환원금이 납입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연 8%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7) 연도별 대여금 상환기한 지연이자 회수금액 : 총 29,122,641원(2011년 3,886,810원, 2012년 4,787,195원, 2013년 7,212,881원, 2014년 6,747,623원, 2015년 5,153,426원, 2016년 900,986원, 2017년 433,720원)/ 언론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8) 관련문서 : 2006년도 신문유통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394, 2006.2.10.)

9) 2005.1.27. 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공동배달 목적으로 2005년 11월 설립.

금에 대하여 국고에 반납하라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지적에 따라 2017. 12. 31. 현재까지 19,601백만 원을 회수하여 국고에 반납¹⁰⁾한 적이 있다.

그리고 (구)신문유통원이 언론재단에 통합된 2010년 이후부터는 공배센터 개설·운영을 위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언론재단은 위 공매배당금 12,046,013원을 (구)신문유통원이 임의로 대손 처리해 언론재단에 채권이 양도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잡수익으로 계리하여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국고유통원 회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

또한 대여금에 대한 지체상금 29,122,641원은 국고보조금인 공동배달센터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임에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국고유통원 회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적내용을 수용하면서 위 금액들을 국고에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① 보조금법 제21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문공동배달센터(경기도 부천시) 개설 및 운영을 위해 지원되었던 임차보증금 중 추가로 회수한 12,046,013원과 공배센터의 대여금 상환기한 지연으로 회수한 지체상금 29,122,641원 등 총

10) 총 반납액 : 19,601백만 원(2015년 17,579백만 원, 2016년 1,117백만 원, 2017년 905백만 원)

41,168,654원(이자 별도)은 국고에 반납조치 하시고,(시정)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시정요구·통보

제 목 「정관」 등 규정 운영 부적정

소 관 실 국 미디어정책국

관 계 기 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 용

1. 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 한다.)은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정관」, 「직제규정」 등 67개의 내규(규정, 지침, 규칙 등 명칭 불문)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인사·보수 등과 관련한 중요한 내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 외의 내규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의 결재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재단의 「정관」, 「이사회규정」에는 국정감사, 회계감사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은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국정감사, 회계감사 결과 등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준정부기관인 언론재단은 이사회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사, 회계, 보수 등 자체 내규를 정부가 정한 각종 지침들을 준용하여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이사회 보고사항에 대한 규정 부적정

공공기관운영법은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¹⁾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이 단체협약을 이사회 보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영진이 노조와 맺는 단체협약은 복리후생, 임금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협약체결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시정과 제동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재단은 「정관」과 「이사회규정」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운영법 제17조와 달리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를 이사회 보고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²⁾

감사기간 중 2010년 이후 언론재단이 단체협약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1]과 같이 총 9건의 단체협약 결과 중 4건만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나머지 5건은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예산소요가 없다는 이유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2) 「정관」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회계감사와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6. 12. 16. 언론재단 경영진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노력 조항 신설’과 같이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나. 자체 내규 운영 부적정

감사기간 중 언론재단의 내규를 검토한 결과, 유급휴가 대상, 국외여비 및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법인카드 사용지침,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관련 기준 등이 [별표 2]와 같이 총 10건의 사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임직원이 실시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지급한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10건 2,404,087원, 2016년 16건 5,126,954원, 2017년 22건 7,691,954원 등 총 48건 15,222,884원³⁾이 과도하게 집행되어, 기준에 맞지 않는 내규를 조속히 개선하지 않을 경우 기관 운영이 방만해질 우려가 있다.

다.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규정 부적정

공공기관운영법 제17조 제1항 제11호⁴⁾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내규를 제정 또

3) 국외여비 과다지급 현황

(단위: 회, 원)

연도	과다지급 횟수	과다지급액 합계	숙박비	일비	식비	항공료
2015	10	2,404,087	700,696	-	1,703,391	-
2016	16	5,126,843	3,801,184	-	1,325,659	-
2017	22	7,691,954	4,573,014	634,600	2,484,340	-

* 감사기간 중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확인하여 제출한 금액이며, 과다지급액 추산이 어려운 항공료는 제외된 금액임.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5.17.>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는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공공기관운영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의 내규의 범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언론재단은 [표 1]과 같이 「정관」에 공공기관운영법과 달리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규의 범위를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는 이사회 의결 사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언론재단 「이사회규정」 제7조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한 규정의 대상을 정하고, 같은 규정 제17조에 그 외의 규정·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공공기관운영법」과 언론재단의 「정관」 및 「이사회규정」의 내규 제·개정에 대한 조문

「공공기관운영법」	언론재단 「정관」	언론재단 「이사회규정」
<p>제17조(이사의 설치와 기능)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p>	<p>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p> <p>제59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보수, 인사, 언론진흥기금에 관한 규정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61조(기타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p>	<p>제7조(의결사항) ①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8. 정관 제59조 규정에 의한 재단의 조직, 보수, 인사, 언론진흥기금에 관한 규정 및 이사회규정, 회계규정, 감사규정,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p> <p>제17조(기타 규정·지침의 의결) 제7조(의결사항) 제8호에서 정한 이외의 규정 및 지침 등은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p>

이에 따라, 언론재단은 내규를 제정 또는 변경할 때 조직,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사회규정」 제7조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언론재단이 적용하여야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따라 명시된 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언론재단이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론재단에서는 별도의 「복지규정」 없이 자체 「보수규정」에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⁵⁾한 채로,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대부규정」,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을 제·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언론재단은 「여비규정」, 「무기계약직운용규정」, 「파견근로자운용규정」 등을 제·개정할 때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 의결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조직, 보수, 인사에 관한 규정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이사회 보고사항에 대한 규정 부적정’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에 동의하였고 「정관」과 「이사회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자체 내규 운영 부적정’ 관련

언론재단은 이에 대해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내규는 신속히 정비하겠으며, 언론재단 내규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준과 달리 운영되는 부적정한 사례를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한국언론진흥재단 「보수규정」 제24조 제24조(복리·후생비)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건강진단 및 의료보험 2.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규정 부적정’ 관련

언론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규가 공공기관 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모든 규정과 지침을 포괄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하며, 한국전력공사(공기업), 한국관광공사(공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준정부기관)의 「이사회규정」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언론재단이 사례로 제시한 기관들의 정관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관의 「정관」은 언론재단의 「정관」과 달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을 ‘중요한 규정’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⁶⁾ 위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한편 언론재단은 인사, 보수, 복지 등과 관련된 규정이더라도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개정되는 하위 규정 및 지침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대상이 아니며, 예산의 변동이 수반되는 내규이더라도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내규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언론재단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은 수당,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하위규정이라 하여 이사회 의결없이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8조(이사회 의결사항) 제1조 제10호 사규의 제정 및 변경

한국관광공사 「정관」 제35조(이사회 의결사항) 제1항 제9호 내규의 제정 및 변경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제1항 제9호 정관의 변경 및 규정의 제정과 변경

조치할 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 ①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를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관」 제22조 제2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제2항과 부합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라며,**(시정)**

- ② [별표 2]를 포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내규, 제도 등을 조속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시정·통보)**

- ③ 또한 내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단체협약 결과 이사회 보고 여부(2010년 이후)

단체협약 체결일	주요 내용 요약	이사회 보고 여부	비고
2010.12.24.	○ 노사 단체협약 제정(2010.12.8.)	보고 및 관련 규정 개정 (제10차 이사회)	
2011.12.30.	○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에 한해 교섭단체 인정 ○ 상급단체 전임활동 무급화 ○ 노조 시설편의 제공 축소 - 사무실 제공으로 제한, 비품 및 통신시설, 차량편의 제공 삭제 ○ 특별휴가(경조휴가)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공무원복무규정 적용) → 18일 축소 ○ 일과 가정 조화를 위한 조항 개선 - 휴직, 육아휴직, 법정휴가, 공가, 파견근무 등	미보고 :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예산 소요 없음	
2014.7.11	○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관련 조항 폐지 -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해 산재보상 위로금 지급 조항(제66조) 폐지	보고 및 관련 규정 개정 (제57차 이사회)	
2014.7.3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노조가입자격 제한 추가 ○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및 경평 지적사항 반영해 연차휴가 내용 추가 등	미보고 :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예산 소요 없음	
2015.12.9	○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유효기간 만료 시 적절하게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규정을 명문으로 도입 ○ 단체협약 해석의 불일치 시에 권리분쟁 해결절차 명시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범위 개선 ○ 휴직 사유 인정 범위 및 보수지급 관련 조항 개선 ○ 중학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내용 삭제 ○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판정 시 치료비 지원 관련 조항 개선 ○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관련 조항 삭제	보고 및 관련 규정 개정 (제74차 이사회)	
2016.2.17	○ 국내 연수를 위한 휴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 삭제	보고 및 관련 규정 개정 (제76차 이사회)	
2016.7.8	○ 노조창립기념일 관련 휴일 조항 삭제 ○ 자녀학자금 지원 제한조건 확대 및 관련 조항 개선	미보고 :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예산 소요 없음	
2016.12.16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인정 조항 중 재단이 동의하는 활동 삭제 ○ 직장어린이집 설치 노력 조항 신설	미보고 :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예산 소요 없음	
2018.1.30	○ 휴일 중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개선 ○ 휴직 중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의 기간 제한 ○ 조합 추천자의 징계위원회 참관권 인정 ○ 개방형 직위 채용 시 조합 의견수렴 ○ 기타 조합활동 보장 및 결원 보충, 차별대우 금지 등에 대한 선언적 규정 신설	미보고 :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예산 소요 없음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

내규 명칭	판단근거	재단의 관련 조항 및 현황	조치요구사항
취업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운영	제34조(기타 휴일) 재단의 기타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1. 재단의 창립기념일 4. 정부 또는 재단에서 휴일로 지정하는 날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와 제4호는 유급휴가대상에서 제외
여비규정 * 국외여비 등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등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하여 마련하되, 임직원의 직급별 여비 세부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원 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14.10월)’방안에 따른다. ○ 국제회의 참석 등 해외 출장시에는 「공공기관 공무원 국외여행 개선방안(2008.4.10)」을 따른다.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국외여비) ① 국외여행시 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별표 2의 국외여비 기준표에 따른다.	1.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공무원 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에 맞게 국외여비 지급기준 개정 2. 공무원 여행 사전심사, 보고서 등록 등 「공공기관 공무원 국외여행 개선방안」 준수 3.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방안 개선
여비규정 * 국내이전 관련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국내이전비 지급액: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제17조(이전비) ③ 이전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5톤 초과 이사화물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맞게 개정
여비규정 * 가족여비 관련	「공무원여비규정」 제21조(국내 가족여비)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16조(가족여비) 1. 12세 이상의 가족에게는 전근지에 해당하는 등급의 교통운임, 일비, 식비 2. 12세 미만 6세 이상의 가족에게는 전근지에 해당하는 등급의 교통운임, 일비,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한 액 3. 6세 미만의 가족에게는 전근지에 해당하는 등급의 교통운임, 일비, 식비의 2분의 1에 상당한 액	가족여비 지급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개정
법인카드사용지침 * 사용금지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제13조(집행세부지침) ④ 법인카드의 심야시간 사용제한은 23:30 ~ 익일 06:00로 한다. 제17조(모니터링 시행) ② 모니터링 항목은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소, 휴일사용, 거주지 사용 등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확인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맞게 비정상시간대 조정 2. 사용금지 조항 등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같게 명확하게 규정

내규 명칭	판단근거	재단의 관련 조항 및 현황	조치요구사항
법인카드사용지침 *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 역 공개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표준서식에 따라 매월 각 기 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9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법인카드 관리자는 이사장 등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홈페이지 에 공개한다. *감사일 현재까지 기관장 업무추진 비는 2016년까지의 월별 집행내역, 건수, 집행금액을 간략한 형태로 공 개하고 있고, 임원 업무추진비는 2017.8월까지만 공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법 인카드사용지침」에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과 공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홈페이지에 표준서식에 맞 게 공개 철저
회계규정 * 「국가계약법」 준 용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 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을 준용한다.	제75조(계약의 원칙) ④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계약사항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자체 「회계규정」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의 「국 가계약법」 준용 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행규정 으로 개정
회계규정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 우	제84조(견적서의 제출요구)① 수의 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 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82조 제4호, 제7호 및 제8 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 할 수 있다.	자체 「회계규정」을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에 맞게 개정
회계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⑥제5항에 의 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별도 기준없이 사업에 따라 구성·운 영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수립
직원해외연수제도 *자체내규 없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 각 공공기관은 임직원 국외파견 시 지원항목과 지원기준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지 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국외 교육훈련자에 대하여는 「공 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준 용하여 집행	선발기준, 지원기준, 결과보고서 작 성기준, 환수조치 등에 대해 별도 기준없이 '연도별 직원 교육계획'에 따라 지원 ○ 체재비 등을 연수자가 제출하는 인보이스에 따라 지급 ○ 체재비 환수 관련 사항 등이 인사 혁신처 예규와 달리 규정	1. 지원기준, 연수자 선발 기준,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등 지원기준 수립 2. 체재비 환수 관련 사항 등 지원조건 미준수자 에 대한 조치사항 개선

자료: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이며,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례를 열거한 것은 아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

제 목 의원면직 처리업무 불철저

소 관 실 국 미디어정책국

관 계 기 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 한다.)은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가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에 대해 징계를 요구(2016. 5. 18.)하였음에도 ○○○○가 사업본부장(◇◇◇◇ 이사/퇴직)과 면담을 거쳐 2016. 5. 24. 의원면직을 신청(권고사직)하자 같은 날에 이를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 등(판단근거)

당시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재단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론재단은 ○○○○의 성희롱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의원면직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와 관련하여 언론재단은 ○○○○의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해 외부 자문을 실시한 결과,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의견(2016. 5. 16./노

무법인 ◆◆/문서 수신)과 가해자가 성희롱을 부인하여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어렵다는 의견(2016. 5. 17./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유선자문)을 받았다.

위의 자문결과 보고 문건(2016. 5. 17. 경영지원팀 작성)에 따르면 언론재단(경영지원팀)은 징계양정이 파면, 해임보다는 정직 등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언론재단은 ○○○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2016. 5. 24. 권고사직을 신청하자 의원면직을 허용하여 아무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같은 날 퇴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사직은 가장 현실적인 격리 조치로 중징계만큼의 엄정한 효과로 판단되어 ○○○○를 면직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하고, 그 징계양정이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의원면직 제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조치할 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 ① 성희롱을 한 ○○○○에 대해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자체 판단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면직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하시고,(개인주의)

- ②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긴급입찰공고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불철저
소 관 실 국	미디어정책국
관 계 기 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전문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16-34호, 2016. 12. 30. 시행) 등의 규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긴급입찰사유”라 한다)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이하 “긴급입찰공고”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언론재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긴급입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내로 공고해서는 안되며, 긴급입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10일 이내로 공고함으로써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언론재단이 2017. 1. 1.부터 2018. 2. 21.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별표 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71건에 대해 걱정한 긴급입찰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가. 긴급입찰사유 없이 긴급입찰공고한 사례

언론재단은 [별표 2]와 같이 추정가격이 2.1억 원 이상인 계약 34건 중 긴급입찰사유¹⁾가 없는데도, [표 1]과 같이 “2017년 강원도청 광고대행사 선정” 등 15건에 대해 긴급입찰공고를 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한 공고일수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긴급입찰사유 없이 긴급입찰공고한 사례(고시금액 이상)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 일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비고
1	2017년 강원도청 광고대행사 선정	2016.11.16.	2016.11.28.	13		1,048,000	
2	2017년 한국주택금융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6.12.29.	2017.01.18.	21		350,000	
3	2017년 한국수력원자력 광고대행사 선정	2016.12.29.	2017.01.11.	14		378,400	
4	2017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광고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계약	2017.01.05.	2017.01.23.	19		432,000	
5	2017년 인천광역시 협업 광고대행사 선정	2017.01.12.	2017.01.26.	15		595,000	
6	2017년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 계약	2017.01.17.	2017.02.07.	22		사후정산	
7	2017년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2017.01.17.	2017.02.07.	22		사후정산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① 재공고입찰의 경우, ②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④ 그 밖에 ② 및 ③에 준하는 경우, 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인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연번	사업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일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비고
	무 대행 계약						
8	2017년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 무 대행 계약	2017.01.17.	2017.02.07.	22		사후정산	
9	2017년 한국관광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7.02.17.	2017.03.06.	18		2,569,500	
10	2017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광고홍보 대행사 선정	2017.04.11.	2017.04.26.	16		2,735,000	
11	2017년 국민연금공단 소셜미디어 운영대행사 선정	2017.05.10.	2017.05.26.	17		436,730	
12	2017년 주택도시보증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7.07.10.	2017.07.25.	16		580,000	
13	2017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광고대행사 선정	2017.08.10.	2017.08.28.	19		1,115,000	
14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7.08.31.	2017.09.20.	21		550,000	
15	서울주택도시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7.12.26.	1900.02.25.	16		623,320	

나. 긴급입찰공고일수 최소기간 미준수(고시금액 미만)

언론재단은 긴급입찰사유가 인정²⁾되는 “2017년 인터넷 트래픽 자료 구매” 등 7개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표 2]와 같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로부터 10일 전(공고일수 12일)이 아닌 6일 전(공고일수 8일)에 공고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한 공고일수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2개 사업의 경우 1개 업체만 단독 응찰하는 등 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표 2] 공고기간 최소일수 미준수 현황(10일 미만)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일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비고
1	2017년 인터넷 트래픽 자료 구매	2017.02.01. 2017.02.20. 2017.02.28. 2017.03.08.	2017.02.17. 2017.02.27. 2017.03.08. 2017.03.16.	17 8 9 9		33,660	
2	2017 언론인 의식조사	2017.04.19. 2017.05.12.	2017.05.11. 2017.05.22.	23 11		92,800	
3	2017~2019년 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용역	2017.06.05.	2017.06.15.	11		34,980	
4	2017년 온·오프라인 통합 CMS 및 분산 조판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감리	2017.06.16. 2017.07.03. 2017.07.31.	2017.06.30. 2017.07.12. 2017.07.31.	15 10 1		39,200	단독 응찰
5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사업 감리	2017.08.22. 2017.09.05.	2017.09.01. 2017.09.14.	11 10		44,000	
6	2017년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고도화 감리용역	2017.08.24. 2017.09.05.	2017.09.04. 2017.09.14.	12 10		37,422	
7	뉴스저작권 사업전략 수립 및 신상품 개발 연구용역	2017.09.07. 2017.09.18. 2017.10.11.	2017.09.18. 2017.09.27. 2017.10.11.	12 10 1		49,013	단독 응찰

2) 추정가격이 2.1억 원 미만인 계약은 긴급입찰사유에 해당

다. 긴급입찰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긴급입찰공고를 함으로써 유찰되어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언론재단은 [표 3]과 같이 “2017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모바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등 11건의 경우 2017년 세출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 미리 발주 준비가 가능하였고 긴급하게 입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긴급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1개 업체만 단독 응찰하는 등 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특별한 사정 없이 긴급입찰공고를 함으로써 유찰되어 단독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일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비고
1	2017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모바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6.11.28. 2016.12.28. 2017.01.18.	2016.12.27. 2017.01.10. 2017.01.19.	30 14 2		577,215	
2	뉴스저작권 위탁신문사 대상 2017년 지면 (PDF) 수집 및 가공사업	2017.03.27. 2017.04.07. 2017.05.02.	2017.04.07. 2017.04.19. 2017.05.02.	12 13 1		255,550	
3	2017년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위탁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17.03.30. 2017.04.13. 2017.05.04.	2017.04.13. 2017.04.25. 2017.05.10.	15 13 7		417,500	
4	2017년 업무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 수행업체 선정	2017.05.16. 2017.06.13. 2017.07.05.	2017.06.13. 2017.06.27. 2017.07.10.	29 15 6		298,000	
5	2017년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7.06.02. 2017.06.14. 2017.07.11.	2017.06.13. 2017.06.27. 2017.07.11.	12 14 1		367,000	
6	뉴스 트러스트 알고리즘 고도화 및 API 개발	2017.06.09. 2017.06.28. 2017.07.24.	2017.06.28. 2017.07.11. 2017.07.25.	20 14 2		380,950	
7	2017년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 조판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7.06.26. 2017.07.19. 2017.08.07.	2017.07.19. 2017.07.31. 2017.08.08.	24 13 2		584,500	
8	2018년 업무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7.11.13. 2017.11.27. 2017.12.22.	2017.11.24. 2017.12.08. 2017.12.28.	12 12 7		484,950	
9	2018년 온오프라인 통합CMS, 분산조판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7.11.14. 2017.11.29. 2017.12.21.	2017.11.28. 2017.12.12. 2017.12.22.	15 14 2		1,225,000	
10	2018년 인터넷신문 지원용 공용인프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7.11.16. 2017.11.28. 2017.12.22.	2017.11.28. 2017.12.12. 2017.12.27.	13 15 6		421,300	
11	2018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모바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사업	2017.11.16. 2017.11.29. 2017.12.21.	2017.11.28. 2017.12.12. 2017.12.22.	13 14 2		245,000	

라. 공고기간 미준수에 따라 재공고 입찰 등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언론재단은 처음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공고하였다면 제안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입찰공고를 하여 유찰됨으로써 재공고 입찰을 반복하는 등 [표 4]와 같이 결국 총 공고기간이 4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인터넷 트래픽 자료 구매’의 경우 3차례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4] 공고기간 미준수로 유찰되어 총 공고기간이 40일을 초과한 사례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일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비고
1	2017년 인터넷 트래픽 자료 구매	2017.02.01. 2017.02.20. 2017.02.28. 2017.03.08.	2017.02.17. 2017.02.27. 2017.03.08. 2017.03.16.	17 8 9 9		33,660	43일
2	2017년 업무용 전산시스템 운영	2016.11.25. 2016.12.21.	2016.12.21. 2017.01.03.	27 14		411,000	41일
3	2017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모바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6.11.28. 2016.12.28. 2017.01.18.	2016.12.27. 2017.01.10. 2017.01.19.	30 14 2		577,215	44일
4	2017년 업무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 수행업체 선정	2017.05.16. 2017.06.13. 2017.07.05.	2017.06.13. 2017.06.27. 2017.07.10.	29 15 6		298,000	44일

관계기관 의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발주기관의 긴급입찰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조달청에 입찰의뢰 시 조달청과 협의하여 입찰공고기간의 최소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긴급 입찰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긴급입찰공고를 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편성 시 발주부서에 사전 공지함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제안서 제출기간을 짧게 제시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별표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내역(2017.1.1.~2018.2.21.)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일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비고
1	2017년 강원도청 광고대행사 선정	2016.11.16.	2016.11.28.	13		1,048,000	
2	'17년~'18년 중소기업은행 협업광고대행사 선정-전파부문	2016.11.23.	2016.12.14.	22		140,000	
3	'17년~'18년 중소기업은행 협업광고대행사 선정-인쇄(전략상품)부문	2016.11.23.	2016.12.14.	22		6,000	
4	'17년~'18년 중소기업은행 협업광고대행사 선정-인쇄(기업PR)부문	2016.11.23.	2016.12.14.	22		8,000	
5	2017년 인터넷신문 공용인프라 지원사업 운영	2016.11.24.	2016.12.20.	27		450,000	
6	2017년 지역신문 디지털취재장비 임대 사업	2016.11.24.	2016.12.28.	35		481,600	
7	2017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CMS) 지원사업 운영	2016.11.25.	2016.12.21.	27		824,900	
8	2017년도 전라북도청 광고대행사 선정	2016.12.16.	2017.01.03.	19		73,150	
9	2017년 한국장학재단 협업 광고대행사 선정	2016.12.16.	2017.01.04.	20		146,000	
10	2017년 한국주택금융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6.12.29.	2017.01.18.	21		350,000	
11	2017년 한국수력원자력 광고대행사 선정	2016.12.29.	2017.01.11.	14		378,400	
12	2017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광고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계약	2017.01.05.	2017.01.23.	19		432,000	
13	2017년 인천광역시 협업 광고대행사 선정	2017.01.12.	2017.01.26.	15		595,000	
14	2017년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 계약	2017.01.17.	2017.02.07.	22		사후정산	
15	2017년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 계약	2017.01.17.	2017.02.07.	22		사후정산	
16	2017년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 계약	2017.01.17.	2017.02.07.	22		사후정산	
17	2017년 외국언론인 초청	2017.02.08.	2017.02.24.	17		348,000	
18	2017년 인터넷 트래픽 자료 구매	2017.02.01. 2017.02.20. 2017.02.28. 2017.03.08.	2017.02.17. 2017.02.27. 2017.03.08. 2017.03.16.	17 8 9 9		33,660	
19	2017년 한국관광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7.02.17.	2017.03.06.	18		2,569,500	
20	미디어 리터러시 SNS 운영 및 웹진 제작	2017.03.15.	2017.03.29.	15		143,550	
21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	2017.03.17.	2017.03.30.	14		59,400	
22	2017년 뉴스저작권 지킴이 운영 및 SNS 홍보	2017.04.06.	2017.04.18.	13		100,688	
23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2017.04.11.	2017.04.27.	17		56,560	
24	2017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광고홍보대행사 선정	2017.04.11.	2017.04.26.	16		2,735,000	
25	2017 언론산업 실태조사	2017.04.13.	2017.04.27.	15		318,300	
26	2017년 지역신문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사업(감리)	2017.04.13.	2017.04.28.	16		37,180	
27	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2017.04.17.	2017.04.28.	12		239,800	
28	2017년 지역신문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사업(구축)	2017.04.18.	2017.05.11.	24		633,600	
29	미디어교육 온라인 교사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	2017.04.19.	2017.05.11.	23		104,000	

연번	사업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일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비고
30	<신문과방송> 편집·제작 및 SNS 운영	2017.04.20.	2017.05.11.	22		183,864	
31	2017년 국민연금공단 소셜미디어 운영대행사 선정	2017.05.10.	2017.05.26.	17		436,730	
32	뉴스 트러스트 알고리즘 고도화 및 API 개발 감리	2017.06.02.	2017.06.19.	18		39,930	
33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사업	2017.07.03.	2017.07.19.	17		843,498	
34	2017년 국민연금공단 광고대행사 선정	2017.07.03.	2017.07.21.	19		135,700	
35	2017년 주택도시보증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7.07.10.	2017.07.25.	16		580,000	
36	'2017 서울 디지털 저널리즘 컨퍼런스' 대행용역	2017.07.14.	2017.07.25.	12		183,700	
37	2017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광고대행사 선정	2017.08.10.	2017.08.28.	19		1,115,000	
38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7.08.31.	2017.09.20.	21		550,000	
39	2017년 인터넷신문지원용 공용인프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사업	2017.11.24.	2017.12.20.	27		450,000	
40	2017년 전라북도청 광고홍보컨설팅 대행	2017.11.24.	2017.12.11.	18		72,600	
41	2017년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위탁운영사업	2016.11.25.	2016.12.21.	27		824,900	
42	2018년 재단 전자사외보 발행	2017.12.12.	2017.12.26.	15		33,800	
43	미디어리터러시 SNS운영 및 웹진제작	2017.12.20.	2018.01.04.	16		148,500	
44	2018년 한국장학재단 협업 광고대행사 선정	2017.12.26.	2018.01.09.	15		137,500	
45	서울주택도시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7.12.26.	1900.02.25.	16		623,320	
46	2017년 업무용 전산시스템 운영	2016.11.25. 2016.12.21.	2016.12.21. 2017.01.03.	27 14		411,000	
47	2017년 뉴스콘텐츠디지털화 전산자원 유지보수 및 24시간 보안관제	2016.11.28. 2016.12.09. 2016.12.28.	2016.12.09. 2016.12.20. 2016.12.29.	12 12 2		97,344	
48	2017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모바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6.11.28. 2016.12.28. 2017.01.18.	2016.12.27. 2017.01.10. 2017.01.19.	30 14 2		577,215	
49	뉴스저작권 위탁신문사 대상 2017년 지면 (PDF) 수집 및 가공사업	2017.03.27. 2017.04.07. 2017.05.02.	2017.04.07. 2017.04.19. 2017.05.02.	12 13 1		255,550	
50	2017년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17.03.30. 2017.04.13. 2017.05.04.	2017.04.13. 2017.04.25. 2017.05.10.	15 13 7		417,500	
51	2017년 도서관용 뉴스유통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2017.04.05. 2017.04.20. 2017.05.18.	2017.04.19. 2017.05.11. 2017.05.18.	15 22 1		145,500	
52	2017 언론인 의식조사	2017.04.19. 2017.05.12.	2017.05.11. 2017.05.22.	23 11		92,800	
53	2017년 뉴스저작물 이용실태모니터링	2017.04.24. 2017.05.16. 2017.06.13.	2017.05.12. 2017.05.31. 2017.06.14.	19 16 2		66,230	

연번	사업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일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비고
54	2017~2019년 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용역	2017.06.05.	2017.06.15.	11		34,980	
55	2017년 업무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 수행업체 선정	2017.05.16. 2017.06.13. 2017.07.05.	2017.06.13. 2017.06.27. 2017.07.10.	29 15 6		298,000	
56	2017년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7.06.02. 2017.06.14. 2017.07.11.	2017.06.13. 2017.06.27. 2017.07.11.	12 14 1		367,000	
57	2017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운영	2017.06.02. 2017.06.15.	2017.06.15. 2017.06.27.	14 13		140,924	
58	뉴스 트러스트 알고리즘 고도화 및 API 개발	2017.06.09. 2017.06.28. 2017.07.24.	2017.06.28. 2017.07.11. 2017.07.25.	20 14 2		380,950	
59	2017년 온·오프라인 통합 CMS 및 분산조판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감리	2017.06.16. 2017.07.03. 2017.07.31.	2017.06.30. 2017.07.12. 2017.07.31.	15 10 1		39,200	
60	2017년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7.06.26. 2017.07.19. 2017.08.07.	2017.07.19. 2017.07.31. 2017.08.08.	24 13 2		584,500	
61	2017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운영업체 선정	2017.07.20. 2017.08.08. 2017.09.01.	2017.08.08. 2017.08.22. 2017.09.06.	20 15 6		124,460	
62	2017 미디어교육(뉴스리터러시 교육) 교재 리모델링 용역	2017.07.28. 2017.08.10. 2017.09.04.	2017.08.09. 2017.08.22. 2017.09.04.	13 13 1		120,000	
63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사업 감리	2017.08.22. 2017.09.05.	2017.09.01. 2017.09.14.	11 10		44,000	
64	2017년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고도화 감리용역	2017.08.24. 2017.09.05.	2017.09.04. 2017.09.14.	12 10		37,422	
65	뉴스저작권 사업전략 수립 및 신상품 개발 연구용역	2017.09.07. 2017.09.18. 2017.10.11.	2017.09.18. 2017.09.27. 2017.10.11.	12 10 1		49,013	
66	도서관용 뉴스유통시스템 고도화사업	2017.09.18. 2017.10.11. 2017.10.31.	2017.10.11. 2017.10.24. 2017.11.01.	24 14 2		58,520	
67	2018년 업무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7.11.13. 2017.11.27. 2017.12.22.	2017.11.24. 2017.12.08. 2017.12.28.	12 12 7		484,950	
68	2018년 온오프라인 통합CMS, 분산조판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7.11.14. 2017.11.29. 2017.12.21.	2017.11.28. 2017.12.12. 2017.12.22.	15 14 2		1,225,000	
69	2018년 인터넷신문 지원용 공용인프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7.11.16.	2017.11.28.	13		421,300	

연번	사업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일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비고
		2017.11.28. 2017.12.22.	2017.12.12. 2017.12.27.	15 6			
70	2018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모바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사업	2017.11.16. 2017.11.29. 2017.12.21.	2017.11.28. 2017.12.12. 2017.12.22.	13 14 2		245,000	
71	2018년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전산자원 유지보수 및 24시간 보안관제	2017.11.17. 2017.11.28. 2017.12.22.	2017.11.28. 2017.12.12. 2017.12.28.	12 15 7		118,400	

[별표 2] 추정가격 2.1억 원 이상인 계약현황(2017.1.1.~2018.2.21.)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일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비고
1	2017년 강원도청 광고대행사 선정	2016.11.16.	2016.11.28.	13		1,048,000	
2	2017년 인터넷신문 공용인프라 지원사업 운영	2016.11.24.	2016.12.20.	27		450,000	
3	2017년 지역신문 디지털취재장비 임대 사업	2016.11.24.	2016.12.28.	35		481,600	
4	2017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CMS) 지원사업 운영	2016.11.25.	2016.12.21.	27		824,900	
5	2017년 한국주택금융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6.12.29.	2017.01.18.	21		350,000	
6	2017년 한국수력원자력 광고대행사 선정	2016.12.29.	2017.01.11.	14		378,400	
7	2017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광고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계약	2017.01.05.	2017.01.23.	19		432,000	
8	2017년 인천광역시 협업 광고대행사 선정	2017.01.12.	2017.01.26.	15		595,000	
9	2017년 외국언론인 초청	2017.02.08.	2017.02.24.	17		348,000	
10	2017년 한국관광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7.02.17.	2017.03.06.	18		2,569,500	
11	2017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광고홍보대행사 선정	2017.04.11.	2017.04.26.	16		2,735,000	
12	2017 언론산업 실태조사	2017.04.13.	2017.04.27.	15		318,300	
13	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2017.04.17.	2017.04.28.	12		239,800	
14	2017년 지역신문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사업(구축)	2017.04.18.	2017.05.11.	24		633,600	
15	2017년 국민연금공단 소셜미디어 운영대행사 선정	2017.05.10.	2017.05.26.	17		436,730	
16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사업	2017.07.03.	2017.07.19.	17		843,498	
17	2017년 주택도시보증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7.07.10.	2017.07.25.	16		580,000	
18	2017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광고대행사 선정	2017.08.10.	2017.08.28.	19		1,115,000	
19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7.08.31.	2017.09.20.	21		550,000	
20	2017년 인터넷신문지원용 공용인프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사업	2017.11.24.	2017.12.20.	27		450,000	
21	2017년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위탁운영사업	2016.11.25.	2016.12.21.	27		824,900	
22	서울주택도시공사 광고대행사 선정	2017.12.26.	1900.02.25.	16		623,320	
23	2017년 업무용 전산시스템 운영	2016.11.25. 2016.12.21.	2016.12.21. 2017.01.03.	27 14		411,000	
24	2017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모바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6.11.28. 2016.12.28. 2017.01.18.	2016.12.27. 2017.01.10. 2017.01.19.	30 14 2		577,215	
25	뉴스저작권 위탁신문사 대상 2017년 지면 (PDF) 수집 및 가공사업	2017.03.27. 2017.04.07. 2017.05.02.	2017.04.07. 2017.04.19. 2017.05.02.	12 13 1		255,550	
26	2017년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17.03.30. 2017.04.13. 2017.05.04.	2017.04.13. 2017.04.25. 2017.05.10.	15 13 7		417,500	

연번	사업명	공고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공고일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비고
27	2017년 업무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 수행업체 선정	2017.05.16. 2017.06.13. 2017.07.05.	2017.06.13. 2017.06.27. 2017.07.10.	29 15 6		298,000	
28	2017년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7.06.02. 2017.06.14. 2017.07.11.	2017.06.13. 2017.06.27. 2017.07.11.	12 14 1		367,000	
29	뉴스 트러스트 알고리즘 고도화 및 API 개발	2017.06.09. 2017.06.28. 2017.07.24.	2017.06.28. 2017.07.11. 2017.07.25.	20 14 2		380,950	
30	2017년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7.06.26. 2017.07.19. 2017.08.07.	2017.07.19. 2017.07.31. 2017.08.08.	24 13 2		584,500	
31	2018년 업무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7.11.13. 2017.11.27. 2017.12.22.	2017.11.24. 2017.12.08. 2017.12.28.	12 12 7		484,950	
32	2018년 온오프라인 통합CMS, 분산조판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7.11.14. 2017.11.29. 2017.12.21.	2017.11.28. 2017.12.12. 2017.12.22.	15 14 2		1,225,000	
33	2018년 인터넷신문 지원용 공용인프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2017.11.16. 2017.11.28. 2017.12.22.	2017.11.28. 2017.12.12. 2017.12.27.	13 15 6		421,300	
34	2018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모바일)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사업	2017.11.16. 2017.11.29. 2017.12.21.	2017.11.28. 2017.12.12. 2017.12.22.	13 14 2		245,000	

문화체육관광부

주 의 요 구

제 목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및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실 국 미디어정책국

관 계 기 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 용

1. 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 한다.)은 [표 1]과 같이 일부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동일 사업에 집행 또는 타 정보화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추가 집행하였고, 대부분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낙찰차액 및 전용재원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 추진 내역(2014~2017년)

(단위:천원 / () :전용자원)

구분	사업명	연도	1차 계약(본계약)		추가계약 (전용자원/낙찰차액 활용)			계약업체	
			예산	계약액	예산액	계약액	계약방법		
언론진흥 기금/인계 회계	① 뉴스저작권 신문사 지면 PDF 수집/가공	2017	269,070	255,550	31,950	31,950	수의		
지역신문 발전기 금	② 지역신문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2017	800,000	633,600	72,490 (326,400)	72,490 326,400	수의 수의		
		2016	900,000	772,752	133,548	107,000	경쟁		
						26,000	26,000	수의	
		2015	952,000	912,000	40,000	40,000	수의		
		2014	860,000	750,000	47,000	47,000	수의		
		소계	3,512,000	3,068,352	319,038 (326,400)	618,890			
합계			3,781,070	3,323,902	350,988 (326,400)	650,840			

※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낙찰차액 사용 부적정

기획재정부 「(2014~2017)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다만 낙찰차액은 국무회의 등 관련 정책결정·심의기구를 거쳐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 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론재단은 일부 정보화 사업 예산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계속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도 언론재단은 [표 1]의 정보화 사업 계약의 낙찰차액 350,988천 원(6회)을 경쟁 입찰(1회) 및 수의계약(5회)으로 동일한 사업에 추가로 집행하여 부적정하였다.

2) 수의계약 부적정

한편 언론재단은 [표 2]처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낙찰차액을 본 입찰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의계약하라는 의결에 따라 수의로 계약을 하였다.

[표 2] 추가 계약시(낙찰차액, 전용자원 포함) 수의계약 사유 등

(단위:천원, *전용자원)

사업명	연도	본 계약 예산	추가계약		계약업체	비고(수의계약 사유 등)
			계약액	계약 방법		
① 뉴스 저작권 신문사 지면 PDF 수집/가공	2017	269,070	31,950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2호 사목
② 지역신문 디지털	2017	534,000	52,339	수의		○제233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2016.12.14.)

취재장비 임대 지원						-입찰 후 절감된 비용을 본 입찰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계약하여 예산 한도 내 최대 지원
	2016	590,000	49,853	수의		○제215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2015.9.4.) -입찰 후 잔액 발생시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수행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수의계약을 추진
	2015	590,000	49,472	수의		○제200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2014.10.14.) -입찰 후 잔액 발생시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수행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수의계약을 추진
	2014	585,000	38,900	수의		○제192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2014.2.7.) -입찰 후 잔액 발생시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수행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수의계약을 추진
	소계	2,568,000	222,514			
③ 지역신문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72,490	수의		
	2017	800,000	326,400 *	수의		○제239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2017.5.11.) -공용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 추진 불가로 3억원을 동 사업비로 전용 -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수행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사업 수행
			107,000	경쟁		
	2016	900,000	26,000	수의		○제226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2016.6.3.) -조달청 입찰 후 발생하는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입찰시 동일한 조건으로 기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추가 구축 지원
	2015	952,000	40,000	수의		○제212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2015.6.5.) -조달청 입찰 후 발생하는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입찰시 동일한 조건으로 기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추가 구축 지원
	2014	860,000	47,000	수의		○제192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2014.2.7.) -조달청 입찰 후 발생하는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입찰시 동일한 조건으로 기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추가 구축 지원
	소계	3,512,000	618,890			
합계	6,080,000	841,404				

※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낙찰차액을 동일사업에 다시 집행할 수 없지만, 낙찰차액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 물량 확대를 이유로 동일 사업에 집행하고자 할 경우라도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경쟁 입찰, 변경계약, 수의계약 등을 택하여 계약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언론재단 「회계규정」 제82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 필

요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표 2]의 ②와 ③사업의 낙찰차액(9건)은 모두 2천만 원 이상이며, ②사업은 카메라 장비 등을 임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③사업은 용역의 결과물이 일반적이고 특정업체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②와 ③사업의 낙찰차액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낙찰차액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선정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은 없다.

그런데도 언론재단(○○○○팀/사업 담당부서)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기존 수행업체와 변경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하라고 의결하자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②와 ③의 용역사업의 낙찰차액에 대해 그대로 수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였다.

또한 언론재단은 ③의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의 경우 낙찰차액(133,548천 원)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행업체를 선정한 바 있는데도, 기타 나머지 낙찰차액에 대해서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하여 수의계약한 것은 부적절하였고, 2017년의 경우 전용채원(326,400천 원)에 대해서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하여 경쟁입찰이 아닌 기 선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였다.

3.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계약 방법 결정 부적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지원대상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계약방법까지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언론재단(○○○○팀/사업 담당부서)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수의 계약하라는 의결내용이 권한 없는 행위임에도 그대로 수의로 계약하였다.

위 1)~3)과 같이 언론재단이 낙찰차액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등 계약질서를 훼손시켰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낙찰차액 사용 부적정’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보조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 집행하라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예산집행을 제고, 지역신문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낙찰차액을 동일 사업에 집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언론재단이 낙찰차액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용도 외에 집행하여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②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

언론재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

의계약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하지만 ②사업은 카메라 등 단순한 장비 임대 계약이고, ③사업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크롭(crop) 작업은 재단이 제공한 솔루션을 이용한다고 하여 특정 업체의 기술이 필요 없고 기사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호환성과는 상관이 없어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③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계약 방법 결정 부적정’ 관련

언론재단은 지역신문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확대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당해연도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라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낙찰차액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지만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조치할 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이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집행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 ②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방법에 대해서까지 의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 ③ 수의계약 요건 준수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등
소 관 실 국 미디어정책국
관 계 기 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 한다.)은 연간 평균 약 61억 원 규모의 정보화 사업¹⁾을 수행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입찰·계약 업무 개선 방안 미 이행

언론재단이 2015. 12. 16. 입찰·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시행한 「입찰·계약 업무 개선 방안」²⁾에 따르면 전산분야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1) (2015~2017) 총 68건 183억원(평균 약 61억원) : 언론진흥기금기금 121억원(40건), 지역신문발전기금 43억원(14건), 법인회계 18억원(14건)

2) 입찰 계약 업무 개선 방안(2015.12.16.)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사유)
광고·조사	①제안요청서(사업팀)→②입찰공고(경영지원팀)→③기술평가 심사위원 풀 작성/선정(사업팀)→④기술평가(사업팀)→⑤가격평가(조달청)→⑥개찰·계약체결(경영지원팀, 조달청)	①제안요청서(사업팀)→②입찰공고(경영지원팀)→③기술평가 심사위원 풀 작성(사업팀)→④심사위원 선정(경영지원팀)→⑤기술평가(사업팀), 가격평가(조달청)→⑥개찰·계약체결(경영지원팀, 조달청)	
전산(뉴스유통사업)	①제안요청서(사업팀)→②입찰공고(경영지원팀)→③기술평가 심사위원 풀 작성/선정(사업팀)→④기술평가(사업팀)→⑤가격평가(조달청)→⑥개찰·계약체결(경영지원팀, 조달청)	①제안요청서(사업팀)→②입찰공고(경영지원팀)→③기술평가/가격평가(조달청)→④개찰·계약체결(경영지원팀)	1억 미만 사업, 신규사업 등 긴급진행건은 재단이 기술평가 진행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모두 조달청에 의뢰하되, 1억 원 미만 사업, 신규 사업 등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은 내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론재단은 위 개선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는 전산분야(정보화) 용역사업의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입찰·계약 업무를 추진해야 했다.

이번 종합감사 기간 중 위 개선 방안의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언론재단은 [표 1]과 같이 정보화 용역사업 12건에 대해 계약 소요기간 단축 등 이유로 조달청에 기술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에서 기술평가를 진행하여 개선 방안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표 1] 입찰·계약 업무 개선 방안 미 이행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재원	사업명	계약금액	주사업자	계약방법	조달청 계약 의뢰	기술평가 주체	조달청에 기술평가 미 의뢰 사유	검토 의견
2016 (4건)	언론 기금	뉴스트러스트 웹페이지 구축 등 홈페이지 개편	183,210		일반경쟁 협상계약	조달청	재단	계약 소요기간 단축	미준수
	법인 회계	도서관용 뉴스유통서비스 구축	257,400		일반경쟁 협상계약	조달청	재단	계약 소요기간 단축	미준수
	법인 회계	e-NIE(온라인 뉴스활용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118,185		일반경쟁 협상계약	조달청	재단	계약 소요기간 단축	미준수
	언론 기금	2016년 온·오프라인 통합 CMS 및 분산조판 시스템 구축	1,378,520		일반경쟁 협상계약	조달청	재단	조달청 심사 일정(장소, 심사위원) 지연으로 연내 계약 불가	미준수
2017 (8건)	언론 기금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사업	843,498		제한경쟁 협상계약	조달청	자체	소요시간 단축 및 기술력 없는 부적격 업체 선정 방지	미준수
	법인 회계	2017년 도서관용 뉴스유통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145,500		일반경쟁 협상계약	조달청	재단	계약 소요기간 단축	미준수
	법인 회계	뉴스저작권 위탁신문사 대상 지면(PDF) 수집 및 가공사업	255,550		일반경쟁 협상계약	조달청	재단	계약 소요기간 단축	미준수
	지발 기금	2017년 지역신문 기사자료 디지털화 사업 계약	633,600		일반경쟁 협상계약	조달청	재단	조달청 심사 일정(장소, 심사위원) 지연으로 연내 사업수행 불가	미준수
	언론 기금	2017 뉴스콘텐츠디지털화 전산자원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97,344		일반경쟁 협상계약	조달청	재단	조달청 심사 일정(장소, 심사위원) 지연으로 연내 계약체결 불가	미준수
	법인 회계	2017년 업무용 전산시스템 운영	411,000		일반경쟁 협상계약	조달청	재단	조달청 심사 일정(장소, 심사위원) 지연으로 연내 계약 불가	미준수
	법인 회계	2017 업무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업체선정	298,000		일반경쟁 협상계약	조달청	재단	조달청 심사 일정(장소, 심사위원) 지연으로 연내 사업수행 불가	미준수
	언론 기금	2017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고도화 사업	584,500		일반경쟁 협상계약	조달청	재단	조달청 심사 일정(장소, 심사위원) 지연으로 연내 사업수행 불가	미준수

2) 정보화 책임관 미 지정 및 기획·조정 기능 미흡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은 소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

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화 사업을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게 하고 문화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언론재단은 법인회계, 언론진흥기금 회계, 지역신문발전기금 회계 등에서 연간 약 61억 원(2015~2017년) 규모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지 않아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이 없고 또한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가. 평가위원 인력 풀 부족

언론재단 경영지원팀은 사업부서가 제출한 광고 분야 74명, 뉴스저작권 분야 28명, IT 분야 36명, 기타분야 21명의 평가위원 POOL을 관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이하 ‘문화정보화 지침’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 규모 등을 고려, 각 분야별 전문가를 엄선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수의 10배수 이상으로 인력 풀(POOL)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언론재단이 연간 약 61억 원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도 뉴스저작권, IT분야의 인력 풀은 그 수가 적어 [표 2]처럼 외부평가 위원이 중복되어 선정되고 있다.

나. 평가위원 선정관련 객관적 기준 및 절차 미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3조의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및 제30조 등에 따

르면 정보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 평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기술평가가 가격평가보다 협상대상자 선정에 더 많은 영향³⁾을 끼치고 있으므로 기술능력 평가 위원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언론재단은 사업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가 평가위원 인력 풀 관리 및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내·외부의 청탁과 개입이 차단되도록 평가위원 명단의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언론재단은 「입찰·계약 업무 개선 방안」(2015. 12. 16.)에 따라 2016년부터 경영지원팀이 기술평가 개최 3~4일 전에 인력 POOL에서 산업·학계의 관련 전문가 4명(기관 1명, 중복 불가)을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내부위원은 직원 1명(본부장과 실·국장 중 1인), 언론진흥발전기금위원회 관리위원 2명 등 3명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장소 안내, 수당 지급 업무 등을 위해 사업담당부서에 기술평가 개최 1일 전에 평가위원 명단을 메일로 송부하고 있으며, 기술평가 진행은 경영지원팀이 하고 사업담당자는 배석하여 사업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언론재단 경영지원팀이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기술평가 실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영지원팀 담당자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평가위원 후보를 선정한다음 전화를 해서 참석 가능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평가위원 선정의 구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에 따르면 기술평가 배점한도는 90점,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는 10점

체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업부서에 평가위원 명단의 통보는 기존 업체와 사업 진행 편의 등을 이유로 사업담당자가 평가위원에게 특정업체 선정 요청 등의 부적정한 개입 여지가 있다. 다른 공공기관의 평가위원 명단 노출 방지 조치 및 취지⁴⁾를 볼 때, 언론재단도 사업담당부서에 평가위원 명단을 통보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다. 평가위원 중복 선정

「문화정보화 지침」 제32조에 따르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1년간 발주부서(과, 팀 등)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인력 풀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기간 중 2017년 정보화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의 중복 위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언론재단은 [표 2]와 같이 6명이 1년 간 2회 이상 참석하여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표 2] 2017년 사업부서별 제안서 평가 외부위원 중복 현황

(단위: 천원)

사업부서	재원	사업명	계약액	계약기간	수행업체	심사위원 중복 현황												
						강무성	김선영	이정재	이학진	신한수	이탁희	김석훈	김용규	최영근	1회 참석자			
뉴스 빅 데이터팀	연론기금	2017년 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위탁운영, 유지보수 사업	417,500	'17.5.12~12.31		○	○											
	연론기금	2017년 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	367,000	'17.7.13~12.10				○	○	○								
	연론기금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사업	843,498	'17.8.17~11.30														
뉴스 저작권팀	법인회계	2017 도서관용 뉴스유통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145,500	'17.5.19~12.31				○	○									
	법인회계	뉴스저작권 위탁신문사 대상 지면 (PDF) 수집/가공	255,550	'17.5.10~12.31					○	○								
	연론기금	2017년 뉴스콘텐츠 공용 인프라 유지보수/위탁운영	577,215	'17.1.1~12.31														
디지털 3.0팀	지방기금	2017년 지역신문 기사자료 디지털화 사업 계약	633,600	'17.5.30~11.30		○											○	
	연론기금	2017년 뉴스콘텐츠디지털화 전산자원 유지보수/보안관제	97,344	'17.1.1~12.31		○	○				○							
	법인회계	2017년 업무용 전산시스템 운영	411,000	'17.1.1~12.31						○							○	

4)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부서가 심사평가지원팀에 평가를 의뢰→ 심사평가지원팀은 감사실에 몇 배수의 평가위원 후보 요청 → 감사실은 평가위원 후보를 랜덤 추출하여 전달 → 심사평가지원팀이 평가위원 섭외 선정

연론 기금	2017년 온·오프라인 통합 CMS 및 분산조판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관리	39,200	'17.8.1~11.30		○						○	○		
연론 기금	2017년 온·오프라인 통합 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고도화	584,500	'17.8.8~11.30			○	○	○				○		
					3회	2회			2회			2회	2회	

라. 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부적정

언론재단은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및 제16조⁵⁾에서 기금 관리위원이 언론진흥기금 지원 대상 선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하여 기금관리위원 2명을 정보화사업(언론진흥기금 사업)의 기술평가 내부위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기금관리위원의 경력 등을 분석한 결과, 언론재단은 [표 3]과 같이 정보관련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 행정학 분야 전문가를 정보화 사업의 기술평가 위원으로 선정하여 부적정하였다.

[표 3] 기금관리위원(정보분야 비전문가) 기술평가 참여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재원	사업명	계약금액	기금위원	전문분야
2016	연론기금	뉴스 트러스트 웹페이지 구축 등 홈페이지 개편	183,210	▼▼▼/☆☆☆	경제/행정
2016	연론기금	2016 뉴스 빅 데이터 분석 시스템 고도화	485,500	☆☆☆	행정
2016	법인회계	도서관용 뉴스유통서비스 구축	257,400	▼▼▼	경제학
2016	연론기금	2016 온·오프라인 통합 CMS 및 분산조판 시스템 구축	1,378,520	▼▼▼/☆☆☆	경제학/행정
2017	연론기금	2017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417,500	▲▲▲	경영학
2017	연론기금	2017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모바일) 유지보수/위탁운영	577,215	▼▼▼	경제학
2017	연론기금	2017 뉴스콘텐츠디지털화 전산자원 유지보수/보안관제	97,344	▼▼▼	
2017	연론기금	뉴스 트러스트 알고리즘 고도화 및 API 개발	380,950	▼▼▼	

관계기관 의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감사 지적내용을 수용하면서 「입찰·계약 업무 개선 방안」 준수, 정보화책임관 지정, 평가위원 선정 및 기술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평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제1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5인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 ‘입찰·계약 업무 개선 방안’을 준수하여 정보화 용역 사업의 입찰·계약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기관주의)**
- ② 제안서 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관리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평가위원의 선정 기준, 방법, 보안 등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등 방안을 강구하시고,
- ③ 기금관리위원이 기술평가 위원으로 참여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화체육관광부

주 의 요 구

제 목 소프트웨어 관리업무 소홀

소 관 실 국 미디어정책국

관 계 기 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 한다)은 사무실 업무용 PC 및 정보화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 총 57종(1,053카피)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근거)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5조1), 제6조 제1항2), 제7조 제1항3) 및 제2항4)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리대장과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 관리 상태

-
- 1)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4)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연 1회 이상), 업무담당자의 교육 이수(연 1회 이상) 등으로 소프트웨어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언론재단은 소프트웨어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실태 점검 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언론재단은 아래 [표]의 소프트웨어 총 57종(1,053카피)의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관리대장 및 설치 현황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업무담당자 교육 미이수, 소속 직원 교육 미실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소프트웨어 취득 및 관리실태

(단위 : 종/ 카피)

구분	취득 수량 (2017.12.30.기준)		자산관리대장상 (2017.12.30.기준)		취득후 자산관리대장 미등재		라이선스 증서 부존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무실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31	1,027	22	630	9	397	6	208
정보회사업	26	26	-	-	26	26	-	-
계	57	1,053	22	630	35	423	6	208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소프트웨어 관리실태 : 별표)

또한 언론재단은 위 [표]와 같이 취득한 소프트웨어 총 57종(1,053카피) 중 35종(423카피)은 취득 후 자산 관리대장⁵⁾에 등재를 누락하였으며, 사무실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31종(1,027카피) 중 6종(208카피)의 라이선스는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등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한국언론진흥재단 「자산관리 규정」 제4조(자산관리자) 제2항 자산 관리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관계기관 의견 언론재단은 감사 지적내용을 수용하면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① 향후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및 설치 현황표를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별표>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1. 자산관리대장 취득후 미등재

○ 사무실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단위 : 종/ 카피)

연번	종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취득일자
1	MS-OFFICE 2007	1	26	2008. 7. 1.
2	MS-OFFICE 2007	1	30	2007. 7. 5.
3	MS-OFFICE 2007	1	30	2007.12. 2.
4	MS-OFFICE 2007	1	35	2007.12. 2.
5	에디플러스	1	5	2007. 2.15.
6	ezPDF WorkBoard	1	150	2007.12.21.
7	알툴즈 7.0	1	100	2008. 9.22.
8	한글 FinePring 2005	1	5	2008. 9.18.
9	나모웹에디터 3.0	1	16	1999. 4.
계		9	397	

○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단위 : 종/ 카피)

연번	종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취득일자
1	IBM COGNOS BUSINESS INTELLIGENCE ADMINISTRATOR AUTH USER LIC+ SW S&S 12 MO	1	1	2016. 1. 1.
2	IBM COGNOS BUSINESS INTELLIGENCE PROFESSIONAL AUTH USER LIC + SW S&S 12 MO	1	1	"
3	IBM COGNOS BUSINESS INTELLIGENCE ENHANCED CONSUMER AUTHORIZED USER LIC + SW S&S 12 MO	1	1	"
4	ORACLE STANDARD	1	1	"
5	WEBTOB	1	1	"
6	JEUS	1	1	"
7	AI REPORT	1	1	"
8	SBGrid Ver 2.0	1	1	"
9	ePapyrusPDFGateway	1	1	"
10	Red Hat	1	1	"
11	Cross-Editor 3.0	1	1	"
12	G-ProOne	1	1	"
13	TransArmor_SCS	1	1	"
14	Jtech-DTI	1	1	"
15	IBM Lotus Domino Enterprise Server Processor Value Unit (PVU) Annual SW Subscription & Support Renewal	1	1	"
16	IBM Lotus Domino Enterprise Client Access License Authorized User Annual SW Subscription & Support Renewal	1	1	"

17	IBM Lotus Enterprise Integrator Processor Value Unit (PVU) Annual SW Subscription & Support Renewal	1	1	"
18	IBM CONNECTIONS CONTENT MANAGER PER AUTHORIZED USER ANNUAL SW SUBSCRIPTION & SUPPORT RENEWAL 12 MONTHS	1	1	"
19	IBM LOTUS DOMINO ENTERPRISE SERVER PROCESSOR VALUE UNIT(PVU) LICENSE + SW SUBSCRIPTION & SUPPORT 12 MONTHS	1	1	"
20	IBM LOTUS DOMINO ENTERPRISE CLIENT ACCESS LICENSE AUTHORIZED USER LICENSE + SW SUBSCRIPTION & SUPPORT 12 MONTHS	1	1	"
21	eGate-TEPSv1.0(그룹웨어서버모듈)	1	1	"
22	eGate-SmartStorage(대용량메일첨부패키지)	1	1	"
23	eGate-EDMS(EDMS패키지)	1	1	"
24	eGate-Ucpost For Server	1	1	"
25	eGate-Ucpost For Client	1	1	"
26	i2Disclosure V2.0	1	1	"
계		26	26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미보유

(단위 : 종/ 카피)

연번	종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취득일자
1	아이젝스	1	200	2013.12.20.
2	Quark8.0k	1	1	2008. 9.18.
3	Adobe.US/한글	1	1	2008. 9.25.
4	MS-OFFICE 2007	1	4	2008. 3.18.
19	Quark 9K TU	1	1	2012. 3. 2.
26	한글70PRO 1User	1	1	2007. 9.10.
계		6	208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실 국 미디어정책국
관 계 기 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 용

1. 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 한다.)은 해외연수, 국내외 초청 사업 등의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사업계획 수립 자문 등 부대업무를 대행할 여행사 3개 업체를 선정 후, 개별 사업을 추진할 때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사업(이하 ‘부대업무 대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위 계약방식을 통해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별표 1] ‘연도별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 추진 현황’과 같이 총 50건을 추진하였고, 약 1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언론재단은 주거래 여행사 3곳을 선정 후 사업별로 최저가 견적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위 방식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6)에 따른 지명경쟁 계약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2. 판단기준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대업무 대행사업’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따르면 3개의 주거래 여행사가 사업별로 제출한 견적서를 비교하여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수탁업체를 정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언론재단이 각 사업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 업체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교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수탁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와 청구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업비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언론재단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영수증, 인보이스와 현지여행사로의 송금내역 등 지출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비용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지명경쟁입찰에 따른 계약 추진 관련

지명경쟁입찰방식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으로 한정⁷⁾하고 있다.

7)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

그러나 언론재단의 ‘부대업무 대행사업’은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등을 볼 때 단순히 항공권예약, 여행일정 자문 등의 부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언론재단이 이 사업을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나. 1개 또는 2개 업체 견적서에 의한 수탁업체 선정

언론재단은 주거래 여행사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개별 사업 추진 시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수탁업체로 선정된 3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비교하여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한다고 계획을 수립하였고, 업체들과 이와 같은 내용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대업무 대행사업’ 계약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2015년 상반기프레스크럽 국내문화탐방 여행사 선정’ 등 12개 사업은 2개 업체의 견적서만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한미안보포럼 참가 여행사 계약’ 등 6개 사업은 1개 업체의 견적서만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50개 사업 중 36%에 달하는 18개 사업에 대해 1개 또는 2개의 견적서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 수탁업체 선정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

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19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8) 2017년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 계약서 제2조(계약내용) ① “계약상대자”를 포함하여 “재단”의 대행사로 선정된 **3개 업체가 각 사업별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수탁업체를 정한다.**

[표 1]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

(단위: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견적서 제출 업체
2015년상반기프레스클럽국내문화탐방여행사선정	20150418-20150428	29,787,678	2개
2015년한미안보포럼참가여행사계약	20150518-20150524	25,264,000	1개
공동기획취재(지역신문발전기금)-대전지사	20150718-20150725	54,673,950	2개
2015년한중언론교류중국언론인초청사업여행사계약	20151123-20151129	19,203,300	2개
2016 국제뉴스미디어협회(INMA) 세계총회 참가	20160520-20160527	25,235,000	2개
2016 지역신문 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유럽)	20160925-20161002	53,895,000	2개
2016년 한일언론인 포럼	20160927-20161001	21,647,500	2개
2016 뉴스빅데이터 해외사례 벤치마킹 과정	20161029-20161107	34,632,500	1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해외조사	20161030-20161106	21,578,800	1개
2016 디지털 미디어 아시아 참가차 싱가포르 방문 여행사 선정 계약	20161107-20161112	16,018,000	2개
2016 KPF 디플로마-디지털 저널리즘 해외 교육과정	20160613-20160624	56,151,500	2개
2016 KPF 디플로마-미디어 경영 해외 교육과정	20161004-20161013	30,699,280	1개
2016년 핀란드 미디어교육 연수	20161112-20161120	54,692,800	2개
2016년 한중 언론교류 중국 프로그램	20161121-20161127	4,461,000	2개
미디어교육 해외연수(독일)	20170702-20170709	54,249,220	2개
2017 디플로마 과학저널리즘과 과학기술 해외과정 여행사 계약	20171022-20171102	43,503,260	2개
201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대구지사) 여행사 선정	20170903-20180910	67,643,200	1개
2017 KPF 디플로마 -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	20171001-20171011	45,344,250	1개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다. 지출증빙자료 미확인 등 정산업무 부적정

언론재단의 ‘부대업무 대행사업’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사업비를 가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담당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대업무 대행사업’ 중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수탁업체는 해외에서 수행되는 부대업무(숙박료 및 식비 지불, 가이드비와 차량임차료 지급 등)에 대해 현지여행사를 선정하여 대행하도록 하고, 현지여행사에 대행용역비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언론재단이 수탁업체 지출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여행사의 견적서인 인보이스 외에 수탁업체가 현지여행사에 지급한 비용이 적

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송금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기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탁업체가 현지여행사를 활용한 42개 사업의 정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2]와 같이 ‘2015 KPF디플로마-탐사보도 해외교육과정 시행 여행사계약’ 등 8개 사업만 현지여행사로의 송금내역을 제출받았고, 34개 사업은 현지여행사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수탁업체가 제출한 인보이스만으로 정산을 완료하였다.

게다가 ‘2016년 세계편집인포럼(WEF) 참가 지원’ 등 5개 사업은 감사기간 중 수탁업체에게 송금내역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탁업체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부대업무 대행사업’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고, 이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재단 대상 감사에서 공동기획 취재 및 해외 단기연수 추진 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라”는 권고에 따른 조치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지적사항은 당시 1개 여행사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한 언론재단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현 계약방식이 2010년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결과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② 수탁업체 선정 시 사업계획과 계약서 등에서 정한 방식과 달리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 ③ 그리고 감사기간 중 수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들을 검토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재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 ④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연도별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 추진 현황

연도	대상사업	선정업체	추진사업(건)	계약액	집행액
2015	2015년상반기프레스클럽국내문화탐방여행사 선정	CCCC	총 18건	총 688,356,438원	총 649,897,084원
	2015년한미안보포럼참가여행사 계약	UUU	(주)CCCC		
	세계신문협회(WNM) 총회 및 세계편집인포럼(WEF) 참가	nnnnn	네트워크 6	(주)CCCC네트워크	(주)CCCC네트워크
	공동기획취재(지역신문발전기금)-대전지사		UUU 5	202,524,288원	187,314,577원
	2015년하반기프레스클럽국내탐방여행사계약		nnnnn 7		
	2015 미국 CML 방문 연수 여행사 계약			UUU	UUU
	2015 국제뉴스미디어 총회 참가자 파견 여행사 계약			242,817,300원	227,253,222원
	2015KPF디플로마-K푸드해외교육과정시행관련여행사선정				
	2015년공동기획취재(지역신문발전기금)여행사계약-대구지사			nnnnn	nnnnn
	2015년관훈-KPF프레스펠로십국내초청연수여행사계약			243,014,850원	235,329,285원
	2015년공동기획취재(해외)대행여행사계약-광주지사				
	2015KPF디플로마-탐사보도해외교육과정시행여행사계약				
	뉴스저작권 위탁 회원사 연례 총회 및 토론회 여행사 계약				
	공동기획취재(지역신문발전기금)-부산지사				
	2015NIE일본국제교류사업여행사계약				
	2015년프랑스국립미디어교육센터(CLEMI)연수여행사계약				
2015KPF디플로마[신종감염병과한국사회]해외교육과정시행 여행사계약					
2015년한중언론교류중국언론인초청사업여행사계약					
2016	2016년 국제뉴스미디어협회(INMA) 세계총회 참가	CCCC	총 19건	총 645,382,992원	총 645,382,992원
	2016년 프레스클럽 문화탐방	UUU	(주)CCCC		
	2016 KPF 디플로마 탐사보도 해외 교육과정	VVV	네트워크 9	(주)CCCC네트워크	(주)CCCC네트워크
	2016 지역신문 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유럽)		VVV	279,684,192원	260,839,462원
	2016 지역신문 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대만)		네트웍스 3	VVV네트웍스	VVV네트웍스
	2016년 한일언론인 포럼		주식회사 7	103,003,400원	100,717,920원
	2016 뉴스빅데이터 해외사례 벤치마킹 과정		UUU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해외조사			주식회사 UUU	주식회사 UUU
	2016 디지털 미디어 아시아 참가자 싱가포르 방문 여행사 선정 계약			262,695,400원	255,085,570원
	2016년 세계편집인포럼(WEF) 참가 지원				
	2016 KPF 디플로마-디지털 저널리즘 해외 교육과정				
	2017 지역신문 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그리스)				
	2016 KPF 디플로마-미디어 경영 해외 교육과정				
	디지털 뉴스 저작권관련 해외 법제 현황 조사 여행사 계약				
	2016년 핀란드 미디어교육 연수				
	2016년 한중 언론교류 중국 프로그램				
2016 지역신문 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글로벌브랜드)					
캐나다 미디어교육 연수					
한-이란 언론교류					
2017	2017년 프레스클럽 문화탐방	CCCC	총 13건	총 582,570,366원	총 582,570,366원
	2017년 세계편집인포럼(WEF) 참가지원 관련 여행사 위탁계약	UUU	(주)모두투어		
	[2017 KPF 디플로마-탐사보도] 해외 교육과정	\$\$\$\$	네트워크 6	(주)CCCC네트워크	(주)CCCC네트워크
	미디어교육 해외연수(독일)		주식회사 4	222,461,480원	211,175,595원
	2017년 한미 언론교류 미국 방문		주식회사 4	주식회사 UUU	주식회사UUU
	2017년 디플로마 과학저널리즘과 과학기술 해외과정 여행사 계약		주식회사 3	196,623,436원	189,814,710원
	2017년 향유연 공동취재 및 교육(향유우수 과학기자아카데미) 여행사계약			주식회사 \$\$\$\$	주식회사 \$\$\$\$
	201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대구지사) 여행사 선정			163,485,450원	160,998,075원
	201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부산지사) 여행사 선정				
	2017 KPF 디플로마 -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				
	2017 국제뉴스미디어협회 세계총회(INMA World Congress) 참가				
201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대전지사) 여행사 선정					
201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지역신문팀) 여행사 선정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연도별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 추진 현황

연번	계약명	계약업체	부서명	제출여부	
				증빙	송금
1	2015년상반기프레스클럽국내문화탐방여행사선정		언론지원팀	○	현지×
2	2015년한미안보포럼참가여행사계약		언론지원팀	○	○
3	세계신문협회(WNM) 총회 및 세계편집인포럼(WEF) 참가 관련 여행사 선정		언론인연수팀	○	○
4	공동기획취재(지역신문발전기금)-대전지사		대전지사	○	○
5	2015년하반기프레스클럽국내탐방여행사계약		언론지원팀	○	현지×
6	2015 미국 CML 방문 연수 여행사 계약		미디어교육팀	○	○
7	2015 국제뉴스미디어 총회 참가자 파견 여행사 계약		언론인연수팀	○	×
8	2015KPF디플로마-K푸드해외교육과정시행관련여행사선정		언론인연수팀	○	×
9	2015년공동기획취재(지역신문발전기금)여행사계약-대구지사		대구지사	○	○
10	2015년관훈-KPF프레스펠로십국내초청연수여행사계약		국제교류팀	기제출	
11	2015년공동기획취재(해외)대행여행사계약		광주지사	○	○
12	2015KPF디플로마-탐사보도해외교육과정시행여행사계약		언론인연수팀	기제출	
13	뉴스저작권 위탁 회사사 연례 총회 및 토론회 여행사 계약		뉴스저작권팀	○	×
14	공동기획취재(지역신문발전기금)-부산지사		부산지사	○	×
15	2015NIE일본국제교류사업여행사계약		미디어교육팀	○	×
16	2015년프랑스국립미디어교육센터(CLEMI)연수여행사계약		미디어교육팀	기제출	
17	2015KPF디플로마[신종감염병과한국사회]해외교육과정시행 여행사계약		언론인연수팀	○	×
18	2015년한중언론교류중국언론인초청사업여행사계약		언론인연수팀	○	현지×
19	2016년 국제뉴스미디어협회(INMA) 세계총회 참가		국제교류팀	○	○
20	2016년 프레스클럽 문화탐방		언론지원팀	○	현지×
21	2016 KPF 디플로마 탐사보도 해외 교육과정		언론인연수팀	○	○
22	2016 지역신문 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유령)		부산지사	○	○
23	2016 지역신문 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대만)		광주지사	○	○
24	2016년 한일언론인 포럼		국제교류팀	○	○
25	2016 뉴스빅데이터 해외사례 벤치마킹 과정		국제교류팀	기제출	
26	어른집중도조사위원회 해외조사		조사분석팀	기제출	
27	2016 디지털 미디어 아시아 참가차 싱가포르 방문 여행사 선정 계약		국제교류팀	○	○
28	2016년 세계편집인포럼(WEF) 참가 지원		국제교류팀	○	×
29	2016 KPF 디플로마-디지털 저널리즘 해외 교육과정		언론인연수팀	○	○
30	2017 지역신문 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그리스)		대구지사	○	×
31	2016 KPF 디플로마-미디어 경영 해외 교육과정		언론인연수팀	○	○
32	디지털 뉴스 저작권관련 해외 법제 현황 조사 여행사 계약		언론인연수팀	○	현지×
33	2016년 핀란드 미디어교육 연수		미디어교육팀	○	×

연번	계약명	계약업체	부서명	제출여부	
				증빙	송금
34	2016년 한중 언론교류 중국 프로그램		국제교류팀	○	현지×
35	2016 지역신문 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글로벌브랜드)		대전지사	○	×
36	캐나다 미디어교육 연수		미디어교육팀	○	×
37	한-이란 언론교류		국제교류팀	○	현지×
38	2017년 프레스클럽 문화탐방		언론지원팀	○	현지×
39	2017년 세계편집인포럼(WEF) 참가지원 관련 여행사 위탁계약		국제교류팀	○	○
40	[2017 KPF 디플로마-탐사보도] 해외 교육과정		언론인연수팀	○	○
41	미디어교육 해외연수(독일)		언론인연수팀	○	○
42	2017년 한미 언론교류 미국 방문		국제교류팀	○	○
43	2017 디플로마 과학저널리즘과 과학기술 해외과정 여행사 계약		언론인연수팀	기제출	
44	2017년 항우연 공동취재 및 교육(항공우주 과학기자 아카데미) 여행사 계약		언론지원팀	○	○
45	201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대구지사) 여행사 선정		대구지사	○	○
46	201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부산지사) 여행사 선정		부산지사	○	○
47	2017 KPF 디플로마 -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		언론인연수팀	기제출	
48	2017 국제뉴스미디어협회 세계총회(INMA World Congress) 참가		국제교류팀	○	○
49	201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대전지사) 여행사 선정		대전지사	○	○
50	201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지역신문팀) 여행사 선정		지역신문팀	기제출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권 고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대보증인 제도 불합리
 소 관 실 국 미디어정책국
 관 계 기 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 한다.)은 2010년부터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을 1인당 최고한도액 3천만원 이내(대부기간은 최장 48개월)에서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부하고 있으며, 운용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가결산)	비고
기말 잔액	1,418,684	1,661,684	1,917,735	2,172,527	○(출연액 누계) 2,581,130천원 -(구언론재단 결산액) 1,068,700천원 -(한국언론진흥재단) 1,512,430천원
인 원	149	163.5	168	171	
1인당 기금 누적액	9,585	10,161	168	12,704	
출연을 상한	4	3	3	3	
출 연 액	-	300,000	300,000	300,000	
대 부 금	901,575	1,368,129	1,629,240	1,907,362	

※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 담보는 이사장이 지급보증을 한 채무자의 퇴직금으로 하며, 직원 중 연대보증인 1인이 대부금

에 대해 지급 보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개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는 금융권에서는 2012년에 폐지되었으며, 다른 공공기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를 하는 경우 연대보증제도 대신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⁹⁾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재단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편 언론재단도 연대보증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 하반기에 노조측과 보증보험제도 도입을 협의한 적이 있으나, 보험료가 발생하여 대부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노조측이 반대하여 도입하지 않았다.

감사기간(2018. 2. 1.~2. 21.)중 보증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감사관 의견 제시에 따라 언론재단은 대부 담보는 ‘보증보험과 연대보증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지급 보증’하는 것으로 노조와 협의(2018. 1. 30.)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2018. 2. 21.)하여 부분적으로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감사기간 중 연대보증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로 보증하기(맞보증) 14건 및 직원 18명이 2~4명에 대해 보증을 서 주는¹⁰⁾ 등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고 이는 직원 간 불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재단이 대부금 채권 확보를 위하여 다른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9)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0) 언론재단이 제출한 연대보증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명이 맞보증, 18명이 46명(2~4명)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제도는 노·사 협의를 통해 운영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노조와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보험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권고)

문화체육관광부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관 실 국 미디어정책국

관 계 기 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 용

1. 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 한다.)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¹⁾ 및 언론재단 「정관」 제47조²⁾의 규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매년 '법인회계'를 편성·집행하고 있다.

[표 1] '법인회계' 연도별 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76,391	82,123	92,643	98,582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운영재원 등)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정관」 제47조(회계의 구분) 재단의 회계는 기금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한다.

2. 판단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³⁾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⁴⁾’ 비목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⁵⁾」에 따르면 임직원 국외훈련여비, 업무 관련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외여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 중 언론재단의 2017년 ‘법인회계’ 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한 결과, 언론재단은 ‘법인회계’에 총 371,158천 원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중 언론재단은 [별표 1]과 같이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직위별 업무추진비 105,840천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200천 원 등 총 134,728천 원만을 ‘업무추진비’ 비목에 편성하였고, 정부광고 판촉활동 등을 위한 정부광고영업활동비 97,200천 원 등 사업비 내에 포함된 총 236,430천 원은 ‘업무추진비’ 비목에 편성하지 않았다.

3)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4)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언론재단의 2017년 손금인정한도는 78,584,811원⁶⁾으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언론재단은 2017년에 [표 2]와 같이 이를 초과하여 접대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표 2] 언론재단의 2017년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 및 편성·집행 현황

(단위: 천 원)

한도액(①)	편성액(②)	집행액(③)	초과편성액(①-②)	초과집행액(③-①)
78,584	371,158	246,053	292,574	167,469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국외여비 편성과 관련하여 언론재단은 2017년 ‘해외대학 파견 연수’ 40,000천 원을 국외여비에 편성하지 않고 ‘교육훈련비’에 편성하는 등 2017년에 [표 2]와 같이 국외여비에 편성해야 하는 사항을 국외여비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고 있다.

[표 2] 국외여비에 해당하는 내역을 국외여비에 편성하지 않은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편성 비목	편성액	집행액	비고
해외대학 파견연수	교육훈련비	40,000	18,129	
해외벤처마케팅연수	교육훈련비	40,000	42,443	
국제세미나및포럼	국제언론회의	57,600	1,207	
언론국제회의참가지원	국제언론회의	113,400	87,330	
언론인교원취재및토론회	언론국제화및교류지원	177,100	38,665	
월간<신문과방송>발간	언론산업현황정보제공	4,206	5,976	
KPF디플로마해외교육과정	언론인전문역량강화사업비	217,200	144,327	
항공우주분야언론역량강화사업	언론인전문역량강화사업비	16,250	23,534	
해외단기전문연수	언론인전문역량강화사업비	40,000	71,562	
해외장기연수과정	언론인전문역량강화사업비	21,600	19,793	
합계		727,356	452,966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6)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 계산내역(언론재단 제출 자료)

(단위 : 원)

수입금액	계산내역			한도금액(①+②)
	①해당월수			
71,949,371,190	①해당월수	12,000,000×12/12	12,000,000	78,584,811
	②수입금액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20,00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10/10,000	40,000,000	
		500억원 초과 금액× 3/10,000	6,584,811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목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재단의 ‘법인회계’ 예산서는 ‘언론국제화 및 교류지원’, ‘국제언론회의’, ‘해외언론 지원사업’ 등 사업명만으로 비목을 구분하고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 예산은 비목별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인회계’ 편성 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지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2017년 접대비 성격의 예산 편성·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항목	'업무추진비' 비목에 계상 여부	편성액	집행액	비고
1	직위별업무추진비	○	105,840	95,315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6,200	12,643	
3	화환대	○	10,000	5,600	
4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비	○	2,688	1,127	
5	정부광고영업활동비	×	97,200	49,475	
6	지사광고영업활동비	×	19,200	15,461	
7	언론경영활동비	×	32,400	10,820	
8	법원광고영업활동비	×	14,400	8,177	
9	뉴스저작권협의체운영	×	3,600	4,970	
10	단기과정<본사>	×	3,000	4,475	
11	관리비	×	3,600	3,790	
12	사내업무비	×	7,830	3,349	
13	회계자료수집비	×	3,240	3,213	
14	자금운용자료수집비	×	3,240	3,196	
15	국회자료수집비	×	3,240	2,816	
16	언론인교환취재및토론회	×	-	2,620	
17	세미나및포럼	×	4,500	2,506	
18	선진화사업추진비	×	4,500	2,256	
19	경영선진화역량강화	×	4,500	2,234	
20	KPF저널리즘컨퍼런스	×	1,800	1,794	
21	감사자료수집비	×	3,240	1,453	
22	예산자료수집비	×	2,160	1,283	
23	계약자료수집비	×	3,240	1,205	
24	고객만족도및친절도조사	×	4,500	909	
25	단체지원	×	1,500	792	
26	직원고충처리비	×	4,320	748	
27	국제세미나및포럼	×	-	566	
28	유관기관협력및교류협정추진	×	-	442	
29	정부광고포럼	×	-	415	
30	CreativityR&D	×	-	413	
31	항공우주분야언론역량강화사업	×	4,500	357	
32	시설관리협의회운영비	×	3,600	330	
33	뉴스스타트업지원	×	720	293	
34	해외단기전문연수	×	600	276	
35	언론국제회의참가지원	×	-	270	
36	성과관리	×	1,500	268	
37	온라인교육과정	×	300	128	
38	KPF디플로마	×	-	68	
합계			371,158	246,053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편성액은 예산 최초 편성액임. 사업추진 과정 중 신설, 증액 소요가 발생한 사업은 예산 전용 후 집행하였음.

※ 집행액은 지출부 자료를 기준으로 추진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산출하였음.

- 제외: 세미나, 포럼 등 사업행사 식음료비, 각종 사업추진 위원회 운영비, 내부 워크숍 등 직원대상 회의 식음료비
- 해당: 회계 계정상 업무추진비 그 외 업무협의, 간담회, 업무회의, 명절 선물 등의 목적으로 집행한 금액